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 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

- 1.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2.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)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본인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하니 귀 기관에서는 일선 보건소, 보건지소, 의료기관, 유관 단체 등이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」의 변경된 본인 확인 사항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아 래 >

현 행	변 경
<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: 본인 확인 방법(예	<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: 본인 확인 방법(예
시) >	A) >
?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 을 횔	?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(주민등록증 등)을 활
용하여 화상 전화 를 통해 얼굴과 대조	용하여 화상 전화 를 통해 얼굴과 대조
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	(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, 주민등
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	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)
?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	?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,
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	이메일,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
	?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*
	또는 본인확인서비스**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
	* 「전자서명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
	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)
	**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
 	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?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, 사원증 등을
	[러시크 시간이 도립한 간이 호 , 시전 호 등을
활용하여 화상 전화 를 통해 얼굴과 대조	활용하여 화상 전화 를 통해 얼굴과 대조
끝.	

보 刀

. 년격의료산업협 수신자 17개 시도, 6개 보건의약단체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 의회장, 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

전결 05/17 주무관 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채민정 박준형 김한숙

협조자

시행 (2024.05.17.) 접수 공공수가개발부-249 보건의료정책과-3041 2024.05.17.

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/ mj1611@korea.kr 우 30113 정책과

전화 044-202-2418 / 비공개(5,6) 전송 044-202-3924 / mj1611@korea.kr 행복을 연결합니다 힘이되는 129